

<서면답변>

□ 질문의원 : 김관수 의원

- 미성년자 3자녀 이상을 둔 가구주와 독거노인, 기초생활 수급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가구주에 수도요금 누진금액에 대하여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

(답 변)

- 의원님께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수용가는 대부분 세입자로서 별도의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에 수도요금을 분리부과 지원 할 수 없는 실정이며, 또한 경영이익을 감안, 요금을 지원하는 한국전력과는 다른 바, 위 수용가의 혜택은 곧 수도요금 현실화율에 반영되어 혜택받는 수용가는 물론 일반시민들의 물값 상승요인으로 작용될 것임.
- 따라서 모범음식점 지원사례를 고려, 일반회계차원에서 지원책이 강구 되어야하나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계비, 장애인복지법의 지원 등은 개별법에서 수도요금 및 광열비 등의 지원을 포함하는 의미를 두고 있어 이중지원의 문제가 있으며,
- 적극 관심을 갖고 계신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 T/F팀을 구성하여 지원 시책을 적극 모색 하겠으며, 수도요금의 지원은 위의 사정 등을 고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 다자녀 출산 가정 2006년 지원 현황 : 18억여원 (97,781명)
출산장려를 위한 산모신생아사업, 임산부 영유아건강검진,
임산부 출산교실운영.
- ※ 둘째아 이상 보육아동 지원 현황 : 1,002명 지원
국공립 보육료의 70% (0세-252,000원, 1세-221,000원)

□ 질문의원 : 유재구 의원

- 심곡본동, 심곡본1동, 송내1,2동 지역의 뉴타운 재개발 추진계획 년도는?
 - 이 지역 2005 ~ 2007 연도별 건축된 수와 허가 수는 ?
 - 이로 인한 재개발 시 장애요인에 대한 대책은 ?

(답 변)

-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심곡본동, 심곡본1동, 송내 1·2동 지역은 당시 정비구역지정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많은 지역이 정비사업 대상지로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2007. 4월 경기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의 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완화된 바, 우리시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 및 도시 재정비 촉진지구 타당성 용역을 시행할 예정으로 그 결과에 따라 점차적으로 구시가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현재 이 지역의 2005~2007 연도별 건축된 건축물 수 및 허가건수는 아래와 같음

구 분	건축물 신축현황				건축허가 현황			
	소계	2005년	2006년	2007년	소계	2005년	2006년	2007년
계	107	44	44	19	65	28	28	9
심곡본동	64	25	27	12	29	14	13	2
송 내 동	43	19	17	7	36	14	15	7

※ 건축물 신축 현황은 사용승인검사를 기준으로 작성 함.

- 향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시 정비사업 대상지 등으로 가시화 되면 신규 건축행위로 인하여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건축허가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음.

□ 질문의원 : 강동구 의원

- 시내버스 23-5번 노선이 변경되어 기존구간 이용시민의 교통불편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노선변경과 관련 사전 협의절차가 있었는지, 노선변경의 주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 민원의 해결방안으로 마을버스 013-1번의 노선을 상동까지 연장하여 민원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답 변)

- 시내버스 23-5번 노선은 대장동에서 시청, 원미동 및 소사역을 경유하여 역곡역까지 30분 간격으로 운행하였으나 이용객이 적어 적자노선이었으며, 배차간격이 30분으로 인해 이용 시민도 불편을 느껴왔던 노선임.
- 한편, 중·상동에서 종합운동장, 자연생태공원 및 역곡동 청소년수련원 방면으로 이용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23-5번 노선을 변경하게 되었는데, 버스운송사업이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본건과 관련하여 관내 시내버스 4개 업체와 협의한 바 있음.
- 금년 7월 1일부터 수도권통합요금제가 시행되었는데 이 제도는 10km 구간 이내는 기본요금 900원으로 4회까지 환승이 가능하며, 10km 초과시는 5km마다 100원씩 요금이 증가하는 제도임. 경기버스, 서울버스 및 지하철을 교통수단과 관계없이 동일한 요금체제로 환승하여 이용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거리비례제 요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용시민의 시간절약을 위하여 불합리한 굴곡노선을 조정해 나갈 계획임. 시민들도 환승시스템을 잘 활용한다면 현재보다 짧은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임. 원미동 방면에서 중·상동 방면을 연결할 수 있는 노선도 검토하겠음.

- 013-1번 마을버스 노선연장에 대하여 마을버스는 시내버스로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인 고지대마을, 벽지마을 등과 시내버스 정류장 또는 철도역간을 연결·운행하는 것임. 노선을 연장시는 시내버스 노선중복 여부 등 관련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주민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음.

□ 질문의원 : 김관수 의원

-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게첨한 행정광고에 대하여
 - 공공목적 현수막을 거리에 설치하여도 되는지에 대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상 예외 조항이 있는지?
 - 공공목적의 광고도 가로수나 전주 또는 도로시설물에 설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하여 설치할 것인지?
 - 공공목적의 행정광고물을 게시하기 위한 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 변)

- 공공목적의 현수막을 거리에 설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예외조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8조2항에 의거하여 관계부서의 협의를 받을 경우 광고물의 표시 및 설치가 금지되는 장소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있으며.
- 다만 관계부서의 협의를 거치더라도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할 것, 가로수나 전주·가로등주 등에 매달거나 가로지르지 아니할 것, 도로 및 제방 등의 기능에 영향을 주거나 재배중인 농작물의 생육에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될 것, 주민의 주거생활 환경이나 안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될 것’ 등의 규정을 지키도록 되어있음.
- 행정광고물을 계속하여 불법으로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2006년 8월부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맞는 시정홍보 방법을 모든 부서에 알리고 행정광고물이라 할지라도 관계부서의 협의를 받지 않고 설치한 광고물, 관계부서의 협의를 받았더라도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광고물 등은 지속적으로 정비해 오고 있음.

- 현재 행정광고물의 경우 일반 광고물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어 행정자치부에서도 설치 및 관리지침을 통보하는 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며 우리시에서도 앞으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광고물 설치시 사전협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으며, 위반시에는 철거조치 및 관련부서에 행정광고물 게시방법 등을 통보하여 재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음.

- 공공목적 홍보를 위한 현수막 게시대 설치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불법으로 게시되는 행정광고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2003년부터 2면 부착용 41개소, 4면 부착용 9개소의 총 50개소에 118개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행정용 게시대를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나

- 시정홍보에 대한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으로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행정홍보용 게시대를 추가 설치하여 도로상에 불법 현수막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음.